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9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최보윤·최은석・박성민

이만희 • 김소희 • 김선교

김은혜·최수진·김선민

주진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 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 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지 결산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장애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장애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 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장애인지 결산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의2(장애인지 결산서의 작
	<u>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u>
	<u>장은 예산이 「장애평등정책</u>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
	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
	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이하 "장애인지 결산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장애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u>한다.</u>
	③ 장애인지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 장애평등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u>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지 결</u> <u>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